

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6. 12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8. 6. 25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08.6.2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양종호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“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가 제정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신규 작성
- 신청사 부지매입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반영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계획변경
- 부산시 징수교부금 추가내시로 식품진흥기금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2008년도기금운영변경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명	변 경	당 초	증 감	비고
합 계	3,359	369	2,990	
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	68	0	68	신 설
청사건립기금	3,093	208	2,885	변 경
식품진흥기금	198	161	37	변 경

3. 검토의견

가.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은

2008. 5. 21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관련기금 운용계획을 새로이 수립한 것으로 적법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의 육성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볼때 본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.

나. 청사건립 기금 운용 계획안은

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인 부산교통공사 소유토지 (16,700㎡중 12,830㎡)는 2007. 10. 18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3,870㎡는 자금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잔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현 청사가 노후·협소하여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다.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

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부정·불량식품, 식중독 없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